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63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문진석 · 강준현 · 이정문
윤호중 · 장종태 · 김교홍
정준호 · 이연희 · 손명수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

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1호 중 “각 호 또는 제6항”을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

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7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
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
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
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같음
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
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
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선
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
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
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
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
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
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
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
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
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
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
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
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⑥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
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
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

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생략)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⑧ ----- ----- ----- -----. 1.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 2. (현행과 같음)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 -----제7항-----
--	--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

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삭 제>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
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
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
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
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
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
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
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
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
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
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
다.